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관 작성 시 기명날인 외 서명 방식 추가 등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658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관 작성 시 설립자 기명날인 외 서명 방식 추가(안 제40조 및 제43조)	3
2. 전자적 방법을 통한 사원 결의권 행사 허용(안 제73조제2항)	6
3. 총회의 의사록 작성 시 의장 등 기명날인 외 서명 방식 추가(안 제76조)	9
4. 관계기관 의견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11. 18.
3.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령이나 실무상, 서명은 기명 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에 반하여 현행 「민법」은 정관 작성, 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 날인하도록 하고 있을 뿐 서명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아니하여, 이사가 서명한 정관의 경우 허가가 반려되는 등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한편,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법령상 서명 규정에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있음. 또한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사가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음에도 기명날인을 위해 현장에 참석하거나 별도로 기명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바, 이는 온라인 총회를 허용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원거리에 있는 사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사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온라인총회 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관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이에 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시 서명 및 전자서명의 경우에도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정관 작성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사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총회 확대에 따른 전자적 의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3조, 제73조 및 제76조).

Ⅲ. 검토의견

1. 정관 작성 시 설립자 기명날인 외 서명 방식 추가(안 제40조 및 제43조)

안 제40조 및 제43조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기명날인 외에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의 방식으로도 명의인의 동일성과 진정성(眞正性)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 7. (생략)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財團法人의 設立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第40條第1號 乃至 第5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행위자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으로서 “기명날인”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함. 현행 민법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 시 정관의 작성에는 설립자들이 기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무효로 보고 있음¹⁾.

반면, 현행 「상법」 제179조²⁾, 제287조의3³⁾, 제289조⁴⁾, 제543조⁵⁾는

1) 김준호, 2025, 「민법강의」 제31판, p.97

2)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3) 제3편 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4)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제3편 회사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각각 합명회사⁶⁾,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정관을 작성하는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도록 법문에 규정하여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정관 작성 시 기명날인 외에도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서명⁷⁾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상법상 회사의 정관과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정관의 작성에 있어 명의인의 동일성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고려할 때 상법의 규정과 보조를 맞추고,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의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자의 서명만으로 정관 작성이 유효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⁸⁾.

아울러, 개정안은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⁹⁾이 포함됨을 법문에 명시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6) 참고로,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관 작성시의 서명 허용은 동일함. 「상법」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8) 참고로,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812312, 정부 제출, 임기만료폐기)에서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조10)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온라인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과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사 설립 시 첨부하는 정관 등에 대해 전자서명 기능을 지원하는 등 상법에서 전자서명을 서명에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이도 전자서명을 이용하고 있음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전자적 방법을 통한 사원 결의권 행사 허용(안 제73조제2항)

안 제73조는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식으로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행사 외에 “전자적 방법”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第73條(社員の 決議權) ① (생 략) ②社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 決議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73條(社員の 決議權)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면,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10)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도록 하면서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¹¹⁾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은 총회의 개최 방식 또는 결의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데, 법무부는 2020년 유권해석을 통해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결의에 있어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동일성만 확인할 수 있다면 거수·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라 온라인으로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비영리법인의 온라인총회 개최를 상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음¹²⁾.

다만, 전자투표와 같은 방식의 결의권 행사도 가능한지,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 사원의 동일성 확인 방법 등 어떠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11)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12)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참고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2020.12.23.

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¹³⁾ 개정안은 “전자적 방법”을 서면, 대리인에 의한 행사와 같이 결의권 행사 방식으로 법문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법무부의 유권해석 이후에도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결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특히 정관에 결의권 행사 방법에 대하여 정한 바 없는 법인의 경우)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 상법은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¹⁴⁾¹⁵⁾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적 방법을 총회의 결의권 행사방식으로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3) 서울시NPO지원센터가 지난 4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비영리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의결과정의 기록 및 의결방식의 적합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응답자 127명 중 47%가 “의결과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답했다.

김수연, “코로나 시대,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활성화하려면?”, 조선미디어, 2021.12.17.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0934>

14)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68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⑥ 주주 확인절차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참고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가 법무부 유권해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허용된 것과 다르게 상법상 주주총회는 제364조에서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자주주총회는 도입되어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제2201063호)이 2025년 3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만,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의 예¹⁶⁾와 달리, 민법은 정관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원이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¹⁷⁾ 개정안에 따르면 정관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식을 서면, 대리인, 전자적 방법으로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시 주주 확인절차 등을 하위법령¹⁸⁾으로 위임하도록 한 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도 이와 같이 전자적 결의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3. 총회 의사록 작성 시 의장 등의 기명날인 외 서명 방식 추가(안 제76조)

16)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17)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상법 시행령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개정안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는 총회 의사록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외에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의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76條(總會의 議事錄) ① (생략)	第76條(總會의 議事錄) ① (현행과 같음)
② 議事錄에는 議事の 經過, 要領 및 結果를 記載하고 議長 및 出席한 理事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 -----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의사록(議事錄)은 법인 내부 기관으로서 회의체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어떤 사항을 결의하였는지 기록한 문서를 말함.¹⁹⁾ 총회 의사록은 법인의 등기신청 시 첨부서류²⁰⁾가 되는 등 공신력이 요구되므로 총회의 의장 및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음.

19) 남상우, 의사록의 인증방법에 관한 고찰: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공증과 신뢰(2015년 6월), pp.9-68

20)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상법상 주식회사 총회 의사록의 경우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명시적으로 규정²¹⁾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총회 의사록 작성 시에도 명의인의 동일성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법의 규정과 보조를 맞추어 서명의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²⁾

개정안은 서명의 범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²³⁾이 포함됨을 법문에 명시하고 있는데, 「전자서명법」 제3조²⁴⁾는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전자서명이 포함됨을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같은 조 제3항²⁵⁾에서 이사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21)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2) 참고로,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812312, 정부 제출, 임기만료폐기)에서도 총회 의사록에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24)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5)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규정하여 의사록을 서면문서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전자서명을 허용하려면 전자서명의 전제가 되는 전자문서²⁶⁾ 형태의 의사록의 경우에도 문서의 비치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⁷⁾

4.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실무에서는 서명이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나, 현행 「민법」에는 정관 및 총회 의사록 작성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서명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본인확인 수단에 서명을 추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자서명의 허용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27) 참고로, 상법 시행령에서는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본점 또는 명의개서인의 영업소에서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주주명부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11조(전자주주명부) ① 법 제352조의2에 따라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전자주주명부의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법 제396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전자주주명부에 기록된 사항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 제352조의2제2항에 따라 기재된 다른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을 통해 업무 편의 증대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다만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결의권 행사의 경우, 개정안에서 사원의 결의권 행사방법에 “전자적 방법”을 추가할 뿐 구체적인 행사 절차 및 본인확인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의결권의 효력유무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 등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권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총회 의사록 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전제로 하는바, 개정안은 실물문서를 전제로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민법 제76조 제3항과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문서의 경우에도 “비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서명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상법에서도 정관작성의 방법으로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명날인에 더해 서명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음. 또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이나 제3호의 규정²⁸⁾에 따르면 서명에 전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

자서명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해석되나 이를 명확히 한다는 견지에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면서, 법 체계상 같은 문언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이 서명에 포함됨은 안 제40조에서만 규정²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온라인총회가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원의 결의권 행사 방법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의권 행사 방법에 전자적인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4

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9)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